

청라힐 지웰 더 센트로 인지세 납부 안내

■ 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지를 구입하시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

과세대상	납부기한	기재금액	비고
부동산 분양계약서	계약체결일	분양대금(총 공급대금)	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
분양권 전매계약서	명义변경 승인일	실제 거래가격(분양대금+프리미엄)	

※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.

■ 세액

기재금액	세액	기재금액	세액
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	2만원	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5만원
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4만원	10억원 초과	35만원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7만원	-	-

■ 가산세 : 기간별 최대 300% 부과(관련법령 : 국세기본법 제47조4 제9항, `21.1.1부터 적용)

기간	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	3개월 초과 6개월 이내	6개월 초과
가산세	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	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	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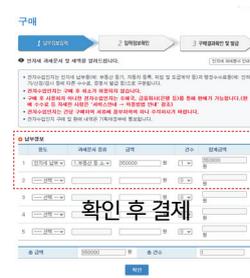
■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 안내

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(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인터넷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③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④ 구매 방법



구매 : 납부정보입력
 용도 : 인지세납부
 과세문서종류 : 부동산 등
 소유권이전
 금액 : 해당 기재금액
 세액 금액
 건수 : 1건

⑤ 출력

*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 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재발행 불가)

■ 우체국, 은행 구매 가능 (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) 후 결제

■ 유의사항

-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여야 하며,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에 현금으로 인계하는 것은 납세의무 미이행으로 가산세가 부과 대상입니다.
- 전매 진행 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계약체결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최초계약자 본인 유지시 등기시에 별도 인지세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.